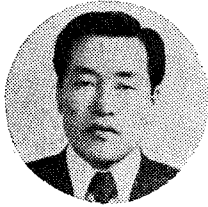


# 콜롬비아 商標制度解說



李 仁 周  
<辨 理 士>

## ① 商標로 登錄될수 없는 標章

콜롬비아에서는 다음의 標章을 商標로 登錄할수가 없도록 關係法令에 規定하고 있다.

(1) 商品 혹은 서어비스의 固有한 性質, 또는 그 産業上의 機能에 따라 當然히 成立되는 形狀 혹은 形식으로 構成되는 것

(2) 상품 또는 서어비스의 型, 種類, 品質, 分量, 用途, 價格, 原產地, 생산혹은 供給의 時期를 表示하기 위한 産業上 또는 工業上 使用하는데 適合한 표장에 의하여 全的으로 구성되는 것

(3) 콜롬비아의 現行言語 또는 商業慣習에 있어서 상품 혹은 서어비스의 通俗의 名稱으로 되어있는 표장에 의하여 全的으로 이루어진 것.

(4) 어떤 企業의 상품 또는 서어비스를 다른 企業의 상품 또는 서어비스와 識別시킬수가 없는 것

(5) 公共의 秩序 혹은 道德에 違背되는것, 또는 상품 혹은 서어비스의 品質, 原產地, 製造方法, 特徵 혹은 그 用途의 適合性에 關於하여 業界나 一般消費者를 欺瞞할 憂慮가 있는 것.

(6) 어떤 國家 또는 國際機關의 紋章및 그 밖의 記

章, 미니셜 혹은 名稱을 管轄官署의 許可를 받지않고 模倣 혹은 複製한 것.

(7) 登錄의 効力이 消滅되었거나 또는 拋棄, 取消 혹은 無効의 處分을 받은 것으로서 그 失効日로부터 3年以內에 提出된 것.

## ② 不登錄事由

다음 事由에 該當하는 商標는 등록될수가 없다.

(1) 同一 혹은 類似한 商品 또는 서어비스에 關於하여 제3者가 먼저 등록을 하였거나 혹은 출원을 한 표장 또는 有効한 優先權을 主張하여 몇사람인가가 나중에 出願한 標章과 公衆을 欺瞞할 程度로 유사한 것(그러나 출원인이 그와같은 사용을 알지 모르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콜롬비아에서 他人이 公公然히 사용하고 있는 표장으로서 公衆을 기만할 정도로 類似한것. 그러나 출원인이 그와같은 사용을 알지 모르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3)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商號 또는 看板에 關連된 活動과 同一한 활동에 關於하여 제3자가 콜롬비아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간판으로서 公衆을 기만할 정도로 유사한것.

(4) 제3자에 속하는 표장, 상호 또는 看板으로서 콜롬비아에서 周知되고 있는 것의 全部 혹은 一部의 複製, 模倣 또는 音譯으로 公衆을 欺瞞憂慮가 있는 것으로 이루어 진것.

(5) 제3자의 權利를 侵害하는것 또는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法規에 違反되는 것.

(6) 外國의 標章主의 代理人이 本人의 承諾을 받지 않고 出願한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 그러나 그 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正當한 이유를 밝힐 경우에는 例外로 하고 있다.

## ③ 登錄出願 및 審査

標章의 등록출원을 하려면 工業所有權局에 아래事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名稱 및 住所

(2) 標章登錄出願에 關連된 特定の 商品 또는 서어비스의 明確하고 完全한 리스트가 딸린 標章의 證明

(3) 표장의 複製

한편 國內에서 開催되는 公認博覽會에서 그 표장으로 商品 또는 서어비스를 展示한 標章登錄出願人으로서 그 표장을 붙인 商品 또는 그 표장으로 提供되는 서어비스가 처음으로 그 박람회 到 전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그 표장을 등록한것은 그 전시일에 登錄出願

한 것으로 看做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博覽會 當局이 發行하는 證明書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에서는 그 商品 또는 서어비스에 대하여 처음으로 그 표장이 사용된 날을 明示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工業所有權局이 출원에 관련된 商標를 登錄할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그 趣旨를 通知한다. 그러면 출원인은 30日以內에 自己의 出願을 正當性을 밝히는 理由를 公認소유권국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심사관은 自己의 判斷과 情報資料를 活用하여 可否決定을 내린다.

따라서 審査結果 출원이 認容되면 公告를 하게되고 公認일로부터 30日 以內에 누구든지 標章登錄에 대하여 異議를 申請할수가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公認소유권국은 證據方法의 提出을 위하여 30일의 期間을 指定하게 되며 이 기간의 처음 10일간은 證據方法提出의 許可를 신청하고 나머지 20일은 허가된 증거방법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異議申請이 없거나 또는 異議가 却下되었을 경우 그 표장은 등록되고 權利의 保障을 明示하는 證書가 交付됨과 아울러 이를 公告한다.

標章은 部類마다 등록하여야하고 표장등록의 効力은 등록된 날로부터 10年間 存續하며 이후 5년씩 無限定 更新 할수가 있다.

이로써 표장의 등록으로서 獨占的 使用權利와 商品 및 서어비스에 대하여 混同을 일으키게할 憂慮가 있는 표장의 사용을 他人에게 禁止시키는 權利를 登錄標章主에게 賦與하게 된다.

#### 4 實施權許與

標章主가 實施權을 許諾함에 있어 實施權者에게 그가 提供하는 商品 또는 서어비스의 質을 保障하도록 하는 規定을 設定하여야 하고 一切의 品質保障에 대한 統制力을 行使할수 있는 대신에 第3者가 받은 損害에 대하여 實施權者와 共同으로 賠償의 責任을 진다.

한편 標章主가 콜롬비아에서 直接 또는 第3者를 통하여 그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取消할수가 있는데 다만 그 不使用이 不可抗力 및 그밖의 事由에 基因할 경우를 除外하고 그 청구일자 전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취소를 청구할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표장등록의 効力에 喪失하였는지의 與否에 대한 判定은 公認소유권국이 담당하며 請求에 따라 有利한 決定을 받은 者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個月以內에 표장등록에 대한 優先的權利를 取得할수가

있다.

한편으로 同一 또는 類似한 部類에 屬하는 商品 또는 서어비스에 대한 표장등록의 効力을 維持시키려면 다른部類에 속하는 商品 또는 서어비스의 1以上에 대하여 그 標章을 사용하면 된다.

#### 5 團體標章 및 商號權

國家, 地方公共團體, 길드, 勞動組合 또는 商工業團體는 그 共同의 利益을 增進하고 그 構成員의 活動과 發展을 助長하기 위하여 商品 또는 서어비스業에 團體標章의 등록출원을 할수있는 제도를 두고있다.

단체표장의 등록원서에는 그 사용을 規制하는 規約의 寫本을 添付하게 되어 있고 이 규약에는 標章權에 의하여 保護되어야할 商品 또는 서어비스의 共通된 特征, 그 사용에 관련된 條件, 그것을 사용할 資格을 가진者, 그 사용에 있어 有效한 統制方法 및 규약위반에 대한 制裁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團體標章의 등록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無效가 된다.

(1) 標章使用에 관한 규약이 公共秩序 또는 道德에 違反될때

(2) 標章登錄出願書에 規約한 條件以外的 조건아래서 사용되거나 사용이 許容되고 있을때이다.

그 이외에도 團體標章에서는 標章에 관한 一般規定을 適用하게 되나. 이것 自體가 商品 또는 서어비스의 質에 대한 特別規定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 6 商號 및 看板

콜롬비아에서의 商號權은 아무런 登錄을 얹고서도 그 상호의 最先의 사용에 의하여 이를 取得할수 있다 그러나 그 登錄도 無妨하며 商號登錄書類가 標章登錄을 위한方式을 갖추었으면 이것도 登錄證明書를 交與하고 이를 公告한다.

따라서 同一한 營業活動을 위한 先商號의 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工業所有權局은 復出願인에게 그 要旨를 통지하여 出願節次續行의 中止를 勸告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登錄出願人은 그 出願日에 그 商號의 사용을 開始한 事實 및 第3者가 그 公告日로부터 그 商號使用을 認識한 事實을 推定할수 있게된다.

만일 상호의 사용이 公共의 秩序 혹은 道德에 違背되거나 營業活動의 性質로 보아 제3자를 欺瞞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許容되지 않는다.

商號는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와 함께 書面으로 讓渡할수 있으며 商號를 使用한 看板에 있어서는 商號에 관한 규정에 準用하고 있다.